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70호

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27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『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이 제정(법률 제12695호, 2014.5.28 공포, 2015.5.29 시행)됨에 따라,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을 규정함 (안 제2조 및 제3조)

- 나. 도시형소공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 내지 제6조)
- 다.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함 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기술교육훈련기관'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함 (안 제9조)
- 마. 우수 숙련기술인' 및 우수 도시형소공인'의 선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바.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'의 지정방법과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대상을 명시함 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사.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'의 운영기관과 전문인력의 기준 등을 규정함 (안 제14조)
- 아.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'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시함 (안 제15조)
- 자.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을 명시함 (안 제16조)
- 차. 권한 위탁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17조)

3. 의견제출

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 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

(전화 : 042-481-8923, Fax : 042-472-6958)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시형소공인의 업종)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

제3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)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별표2와 같다.

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

제4조(도시형소공인 위원회의 설치□운영) 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□산업통상자원부□고용노동부□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1인

2.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중소기업청

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에 및 법 제6조에 따른 종합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□해제
3.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□해제에 관한 사항
4. 법 제17조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및 한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기관□단체의 장(이하 "중

양행정기관의 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제8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, 위원회의 심의□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9조(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)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기관의 도시형소공인 분야 교육훈련 실적이 3년 이상일 것
2.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□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
3. 그 밖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요건

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근 3년 간 도시형소공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
2.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 시설□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
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

③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다.

제10조(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)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

②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선정기준, 절차, 방법 등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,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훈장□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선정기준, 절차, 방법 등의

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,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□고시) ①법 제 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기관□단체의 집적 현황
2.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(이하 “집적지구”라 한다) 기반시설 현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축 계획
3.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

②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구를 지정하여야 하고,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집적지구의 명칭□범위
2. 집적지구의 지정목적
3. 집적지구의 활성화 계획

제13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□한도 및 절차) ①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대상□한도 및 절차를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시□도지사는 사업의 지원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□군□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)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2.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”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③기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□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.

제15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)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(이하 “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□시설□장비의 보수
2.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판매장, 공동작업장, 화장실, 주차장 등의 공동건물□시설의 보수
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□장비의 설치 및 보수

제16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□운영) ①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
2.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
3.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□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
4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중소기업청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14조제3호에 따라 위탁하며,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업무의 위탁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

탁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□작성□분석 및 관리
2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
3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
4.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
5.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
6.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사무
7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
8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사무
9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
10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무
11.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
12. 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시형소공인의 업종 (제2조 관련)

해당 업종	분류 기호
식료품 제조업	10
음료 제조업	11
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13
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16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0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1차 금속 제조업	24
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전기장비 제조업	28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가구 제조업	32
기타 제품 제조업	33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[별표 2]

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(제3조 관련)

행정 구역		도시형소공인 수
특별시 □ 광역시	읍 □ 면 □ 동	50
도 □ 특별자치도 □ 특별자치시	동	40
	읍 □ 면	20

비고: 도시형소공인 수는 동일업종에 한함.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	시행령안
제1장 총칙	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도시형소공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.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. "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"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(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)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 	<p>제2조(도시형소공인의 업종)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)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"란 별표2와 같다.</p>

<p>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</p> <p>① 국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	
<p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	
<p>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</p>	
	<p>제4조(도시형소공인 위원회의 설치□ 운영)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획재정부□산업통상자원부□고용노동부□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1인 2.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에 및 법 제6조에 따른 종합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□해제
3.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□해제에 관한 사항
4. 법 제17조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및 한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	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<p>제5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.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.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.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.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 기술혁신·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.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.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	<p>제7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기관□단체의 장(이하 "중앙행정기관의 장등"이라 한다)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</p>

<p>8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
<p>제6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,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</p>
<p>제7조(통계자료 조사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국내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작성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 작성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

<p>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자료의 조사 작성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
<p>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</p>	
<p>제8조(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)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.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.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	

<p>제9조(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 개발 지원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, 개발 및 연구 2.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, 지도 및 정보제공 3.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.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 연구 	
<p>제10조(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초 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 	<p>제9조(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)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기관의 도시형소공인 분야 교육훈련 실적이 3년 이상일 것 2.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□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. 그 밖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

<p>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</p> <p>4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②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근 3년 간 도시형소공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2.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 시설□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<p>③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훈련교육기관을 지정한다.</p>
<p>제11조(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)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.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.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<p>제12조(우수 숙련기술인 선정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p>	

<p>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,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0조(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</p> <p>②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선정기준, 절차, 방법 등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,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훈장□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기술의 전수 지원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.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.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	

<p>4.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 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(從事)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</p> <p>5.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
<p>제14조(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)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,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.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알선 3.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.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.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<p>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선정기준, 절차, 방법 등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,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p>

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

제15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)

① 시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)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(이하 "집적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
2.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
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,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

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)고시) ①법 제 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기관□단체의 집적 현황
2.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(이하 집적지구"라 한다) 기반시설 현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축 계획
3.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

②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구를 지정하여야 하고,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집적지구의 명칭□범위
2. 집적지구의 지정목적
3. 집적지구의 활성화 계획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)

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

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2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
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

제17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)

① 시·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

<p>2.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</p> <p>3. 공동창고, 교육시설, 전기 가스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개량</p> <p>4.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보수</p> <p>5.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3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 한도 및 절차) ①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대상 한도 및 절차를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② 시·도지사는 사업의 지원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제18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.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	<p>제14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)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.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<p>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”</p>

<p>3.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</p> <p>4.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</p> <p>5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⑤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⑥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이런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 기관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③기타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.</p>
<p>제19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한도,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</p>	<p>제15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)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(이하 "환경개선사업"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·시설·장비의 보수 2.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판매장, 공동작업장, 화장실, 주차장 등의 공동건물·시설

<p>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설의 보수</p> <p>3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□장비의 설치 및 보수</p>
<p>제20조(공동사업의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.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(법인을 포함한다)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. 제품,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.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. 구매,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. 홍보, 브랜드,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
<p>제21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)</p> <p>①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관</p>	<p>제16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□운영)</p> <p>①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1조제2항에</p>

<p>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.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.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□ 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14조제3호에 따라 위탁하며,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22조(사회적 인식의 제고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
<p>제5장 보칙</p>	
<p>제23조(권한의 위임 위탁)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) 또는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</p>	<p>제17조(업무의 위탁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</p>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□작성□분석 및 관리
2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
3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
4.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
5.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
6.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사무
7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
8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사무
9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
10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무
11.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
12. 법 제20조에 다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

<p>제24조(청문)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p>	
<p>부칙</p>	
<p>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p>